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 집행과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 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각종 안건처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앞으로의 행정집행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집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감사기간

1995. 11. 28 ~ 12. 4 (7일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대 상 기 관	관 련 근 거
구청각실과 (8개실과)	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5조
각 동 (19개동)	"

4. 감사반의 편성 — 11명

대 상 기 관	감 사 위 원 장	감 사 위 원	감 사 보 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 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 무 과 시 민 과 재 무 과 세 무 과 징 수 과 민 방 위 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각 동 (19개동)	내무위원장 배종암 의원	예병조 의원(간사) 한정수 의원 염오용 의원 최학득 의원 류광현 의원 이종학 의원 우범택 의원 배영철 의원 서재홍 의원 이천옥 의원	전문위원 최영찬 행정 7급 이소화 기능 9급 김영서 기능10급 이경화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95. 11. 28 (화) 10:00	문화공보실 시 민 과	달 서 구 의 회 소 회 의 실 I	1. 감사실시 선언 2. 위원장 인사 3. 증인 선서 4. 총무국장인사 및 간부소개 5. 감사실시
'95. 11. 29 (수) 10:00	기획감사실장	"	감 사 실 시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95. 11. 30 (목) 10:00	총 무 과	달서구의회 소회의실 I	감사 실시
'95. 12. 1 (금) 10:00	재 무 과 민 방 위 과	"	"
'95. 12. 2 (토) 10:00	세 무 과 징 수 과	"	"
'95. 12. 3 (일)	공 휴 일		
'95. 12. 4 (월) 10:00	내 무 위 원 회 소 관 전 부 서	"	1. 보충질의 및 답변 2. 감사결과 강평 3. 감사종료 선언 ※해당부서장 전원참석

6.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가. 자료제출 요구사항
- 나. 감사대상 사무관련사항
- 다. 주요 현안사항
- 라. 구정질문 중 미처리된 사항
- 마. 주민진정·건의사항

7.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 별첨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5. 11. 28 ~ 12. 4(7일간)

내무위원회

일련 번호	부 서 별	제 목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1	전 부 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 요망	○ 파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소관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한 업무에 대하여 답변이 연구검토 등 애매한 조치가 있는바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 및 조치요망	시 정
2	전 부 서	예비비집행 부적정	○ 환경미화원 재해보상금, 보건복지사무소 개소에 따른 실시실계비 등의 예산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여 당초 및 추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실과장의 사업계획시 예측능력이 부족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집행시기에 예비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함.	시 정
3	기 획 감 사 실	자치법규집 배부	○ 제2대 의회가 구성된 후 자치법규집이 없어 단체장이 수행하는 집행업무 감시는 물론 각종 안전처리 및 조례안 심사에 있어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조속히 자치법규집 배부 요청	건 의
4	"	소송 승소대책 강구	○ 각종 소송에서 승소율이 저조한 것은 무리한 단속 등에 의한 행정집행이거나 소송절차와 대처방법 등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소송대책이 미흡한 결과이므로 승소할 수 있는 종합대책 강구	시 정

일련 번호	부서 별	제 목	지 적 사 항	처리 의견
5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관 심 소 홀	○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업무충분히 파악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하며, 불구하고 예비비와 풀예산 집행 등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한 등 관심소홀로 인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바,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 촉구	시 정
6	건설과 기획감사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요구	○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예산이 사용된다고 지적한바 있으나, 부서장의 사업예측 부족으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바 향후 각종 건설사업의 예산편성시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요구	시 정
7	기획감사실	예산 승인요구 시 착감조서 첨부	○ 예산안 승인요구시에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추가경정시 주요 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요청시에는 당해년도 삭감된 예산의 사업복복을 첨부하여 제출 요망	건 의
8	문화공보실	유선방송 고장시 신속한 서비스체 계 구축	○ 유선방송채널이 장기간 고장이 났어도 수리 및 보수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고장시 신속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토록 시정 요구	시 정
9	"	유선방송 고장시 신고처 홍보	○ 유선방송 고장시 신고처가 유선방송사와 구청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구청에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치달서 등을 활용하여 구민에게 널리 홍보 요망	시 정

일련 번호	부서 별	제 목	지 적 사 항	처리 의 견
10	문화공보실	다양한 프로그램 방영	○ 유선방송 청취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TV녹화 등 단순 프로그램만 방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영토록 관계당국에 건의 요구 ○ 서울신문은 정부의 정책홍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비용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국비로 변경하여 지급토록 중앙에 건의 요구	건의 의
11	문화공보실	신문비용은 국비 로 변경 지급	○ 구청장기타기 경기종목중 축구경기는 각동별 조기축구회 등 많은 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협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므로 축구동호인들로 부터 불만이 야기되고 있음. 따라서 내년도에 개최시 각동별 축구동호인들이 고루 참가할 수 있도록 선수선발방법 변경 요구	건의 의
12	문화공보실	구청장기타기 경기 의 선수선발 방법 변경	○ 전국체육대회를 위하여 건립한 송현승마장 임시마사는 체육대회 행사후 철거약속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완전히 철거를 하지 않아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건의	건의 의
13	문화공보실	송현승마장 철거 건의	○ 구민의 화합과 단결로 풍요롭고 활기찬 선진도시건설을 위하여 개최하고 있는 두류축제가 예산부족에 따른 축제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는비 내실있는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에 행사비를 증액지원 요망	건의 의
14	문화공보실	두류축제 행사비 현실화		

처리 의견

15	총무과	취미클럽 활성화	○ 취미클럽 활동에 있어 참가인원이 저조한 것은 취미종목이 너무 적거나 단순하여 불참한 직원들의 취미생활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사료되므로 취미클럽 활성화대책 강구	시정
16	총무과	하위직공무원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 확대	○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시 퇴직공무원(동장)에게 연수 및 산업시찰 기회를 주는 것보다 일선 하위직 공무원에게 기회를 확대시킬 경우 연수결과를 일선행정에 접목할 수 있을뿐 아니라 선진 자치행정도 앞당길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하위직공무원의 연수 기회 확대 건의	건의
17	총무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선정 강화	○ 각 동사무소에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 선정시 실질적인 심사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부 부적격한 자에게 특별지원금이 지급될 우려가 있으니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강화요구	시정
18	총무과	봉사단체 활성화 방안	○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의 각종 봉사단체에 지급되는 정액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국민운동지원조직이 와해되거나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활성화방안 강구	건의
19	총무과	적십자회비 이종모금 사전 예방	○ 적십자회비 모금시 주택과 사업장의 동별 관할구역이 서로 달라서 일반회비와 특별회비가 이중부과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강화건의	건의

일련 번호	부 서 명	제 목	시 적 시 항	처리의견
20	총 무 과	인사위원회위원 변경	○ 인사위원회 위원중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근무상태를 잘이는 위 원이 없어 사무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련 주요내 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정이 어렵다고 시료되므로 의회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를 잘이는 의회사무과장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건의	건 의
21	시 민 과	전일 및 연장근부 의 홍보	○ 토요일 전일근부제와 민원실 1시간 연장근부제등 자치시대에 걸맞는 구민위주 행정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구민들이 많으므로 통·반장과 자치말서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 요망	시 정
22	제 무 과	수의계약의 특혜 의혹 사전 예방	○ 각종 소규모 건설사업의 수의계약에 있어 일부 특정건설업체는 낙찰되는 회수가 일반 건설업체에 비하여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을 뿐 아니라 또한 낙찰율도 타건설업체에 비하여 높게 나타 난 것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며 보 시정요구	시 정
23	제 무 과	불합구입처 변경	○ 부류족제, 탈구벌족제 등 각종행사에 미는 농산물의 구입시 자 치구내에도 농협과 농산물식매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화백 외일까지 출장기서 구입하는 것은 지체성에도 역행된다고 시 료되므로 관내 식관장을 이용토록 건의	건 의

일련 번호	부서 별	제 목	내 容	의 견
24	제 부 과	다 기 농 사 무 기 기 차 분 지 양	○ 내구년수가 지난 다기농사무기기에 대하여 경매 처분하지 않고 학교 등 각종 교육·단체 등에 기증시 교육효과와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기증 건의	의 견
25	제 부 과	동 일 지 역 내 의 사 업 에 대 한 동 시 계 약 발 주	○ 같은 지역내에서 각종 사업 및 이에 따른 불품을 구입시에 분할계약 및 발주하는 것보다 동시 발주하는 것이 사업비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같은 지역권의 사업을 동시 통합 발주 요망.	의 견
26	세 부 과	지 방 세 심 의 위 원 회 정 비	○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자로 구성되었다고 94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바 있으나, 여전히 시정을 앎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후 결과 제출 요망	시 정
27	징 수 과	지 방 세 체 납 자 사 후 관 리 강 화	○ 지방세가 체납된 사업체가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채권을 확보하지 않으므로 경매시 배당금 순위에서 후순위가 되므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하게 되는데, 향후 체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토록 요구	시 정
28	민 방 위 과	민 방 위 비 상 소 집 방 법 개 선	○ 민방위 비상소집교육시 참석율이 저조하며 또한 불참시 불참자에 대한 이부런 제재 조항이 없어 참석한 대원들로부터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소집방법 개선요구	시 정

일련 번호	부 서 별	제 목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29	민 방 위 과	민방위교육 대상 자 지도감독 강화	○ 민방위대원은 적의 침공이나 지역의 안녕질서를 위해 활동 제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만 큼 교육에 임하는 정신자세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장 등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교육시 지도감독 철저 요망	시 정
30	민 방 위 과	비상급수시설 이 용확대	○ 종합복지회관내의 비상급수시설은 수질이 좋아 인근지역 주민 들이 대부분 급수를 희망하고 있으나 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음.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이 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	시 정
31	민 방 위 과	민방위강사 위촉 부직정	○ 민방위 강사중 교육과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자를 강사로 위촉하므로 교육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시료되므로 향후 제위촉 시 전문성이 다양한 자를 강사로 위촉토록 건의	건 의